

시즌5
제6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 ▲ 이감

[2021학년도 시즈5 제6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19~21] 현대시 : (가) 오장환, 「여수」

* 작품 평가

화자의 모습에는 일제 강점기의 억압적인 현실에 이리저리 방황하며 지냈던 시인의 모습을 투영되어 있다. 즉,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유랑하면서, 고향에 대해 향수만을 되새기는 시인 자신에 대한 자조적 한탄이 중요한 정서임을 알고 읽자.

* 작품 분석

1연 : 여수에 잠겨 추억을 떠올림

여수(旅愁,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함이나 시름)에 잠겼을 때,[→ 여수에 잠겼다는 것은 현재 고향을 떠나 있다는 의미다.] 나에게서는 죄그만 희망도 숨어 버린다.[→ 작은 희망조차 없다, 즉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말이겠다.]

요령(= 낯쇠로 만든 종 모양의 큰 방울)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 이어! [→ 영탄적 표현.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의미도 되고, 요령처럼 흔들린다고 했으니 그 슬픔이 방울소리처럼 번져 나간다는 의미도 되겠다.]

요지경(= 확대경을 장치하여 놓고 그 속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림을 돌리면서 구경하는 장치나 장난감)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 화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요지경 속처럼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 혼란스러운 시대적 현실을 말한다.]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섰다.[→ '나'는 추억에 젖어든다. 또는 숲속에 거닐며 추억에 젖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고향을 떠난 화자는 쓸쓸한 시름에 잠겨 있다. 삶에 대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마음은 불안정하다. 살아왔던 세월과 시대적 상황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그럴 때마다 화자는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고는 한다.

2연 : 현실을 모르고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한 자조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 여러 장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수) [→ 화자 자신의 처지이기도 하다. 혼란스러운 세월 속에서 이곳저곳을 헤매며 살아온 끝에 나이가 들었다.]의 고달픈 주막 꿈 [→ 장을 떠돌던 장돌뱅이가 주막에서 피곤한 몸을 쉬면서 꾸는 꿈이라는 말이다. 즉 안정되지 못하고 고단한 일상을 말한다.]처럼

누덕누덕이 기워진 때 묻은 추억, [→ 화자의 추억은 아름답지 못하고, 가난하고 고단하며 초라하다.]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 영탄적 표현. 현실은 자신의 믿음을 배반하며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뜻이다.]

나는 시정배(=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무리)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현실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시정배처럼,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현실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다.]

⇒ 고향을 떠나 여러 곳을 헤매며 살아온 시간이 길어지면서 화자는 나이가 들었다. 고향을 그리며 추억에 젖어들어 보지만 그 추억은 아름답지 못하고 오히려 초라하고 가난하다. 화자는 자신이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왔음을 깨닫고 자조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3연 : 여수에 잠겨 있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 한탄

괴로운 행려(= 나그네가 되어 돌아다님) [→ 화자의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 속 외로이 쉬일 때이면 [→ 쉴 때면]

달팽이 깍질 [→ 껍질] 틈에서 문밖을 내다보는 얄미운 노스타르자

[→ 노스타르자는 노스탤지어(nostalgia), 즉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알맴다고 했으니 자기 자신이 지닌 추억에 대한 자조적 표현이겠다.]

너무나, 너무나, 빠 없는 마음으로 [→ 화자는 달팽이가 단단한 껍질과는 달리 연하고 빠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자신이 나약한 마음으로 살아 온 것을 돌아보고 있다.]

오 — 너는 무슨 두 뿔따구를 휘저어 보는 것이냐! [→ 영탄적 표현. 달팽이가 뿔 즉 더듬이를 휘젓고 있다. 달팽이로서는 간절한 몸짓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무력하고 약한 발버둥이다. 화자가 고향을 그리는 행위도 이와 마찬가지로. 간절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시름에 잠겨 보지만, 그 그리움의 행위는 무력해서 현실적인 결과나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래서 화자는 더욱 고통스럽다.]

⇒ 유랑의 힘겨운 상황에서 고향에 대한 추억만을 곹씹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와 한탄을 달팽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달팽이에게 말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착각과 편견에 갇힌 채 달팽이처럼 꾸물거리며 살다가 기껏 무기력한 상태에서 고향이나 떠올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감

[22~26] 사회 : 피의 사실 공표와 국민의 알 권리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법 - 피의 사실 공표

피의 사실, 공소 제기, 피의 사실 공표, 피의 사실 공표죄, 인격권, 수사 기관 처널리즘, 알 권리, 언론 출판의 자유, 이익 형량, 위법성 조각 사유

* 지문 분석

문단1 : 피의 사실 공표

- 1) **피의 사실**은 범죄 혐의에 관한 내용이다.
⇒ ‘피의 사실’이 뭔지 우선 이해하고
⇒ ‘범죄 혐의’는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애기지,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 2) 형법 제126조는 검찰이나 경찰 등 범죄 수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일인 **공소 제기**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하는 것을 **‘피의 사실 공표죄’**로 규정하여 금하고 있다.
- 3) 보통 검사나 수사관 등이 공식, 비공식적 경로로 피의 사실을 언론에 전달하여 그것이 보도되도록 하는 형태로 **피의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다.
⇒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범죄 사건은 검사나 수사관 등이 언론에 슬쩍 흘리기도 하고, 아예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 형태로 전달되기도 한다. 어쨌든 정식 재판을 받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되면 문제가 생길 거 같다.

문단2 :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점

- 1) 피의 사실 공표는 형의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흔들고 헌법이 보호해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 ‘피의 사실 공표’를 법에서 금지한 이유는,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배와 ‘인격권’ 침해 때문이다. 확정 판결 전까지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일 뿐 무죄로 추정해야 하므로, 인격권까지 침해하는 피의 사실 공표는 문제가 된다.
- 2) 피의자에 대한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그 **공표만으로 평판과 명예, 초상권 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인적 사항 등이 털리면, 이후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진다.
- 3) 또한 피의 사실이 공표되면 재판이 언론에 의한 여론 재판으로 흘러가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도 침해될 우려가 커진다.
⇒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에도 이목이 쏠려 사법부를 압박하기도 한다. 피의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 4) 이러한 우려는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언론이] 수사 기관의 보도 자료에만 의존하는 **‘수사 기관 처널리즘’**과 같은 보도 관행이 더 키우고 있다.
⇒ ‘수사 기관 처널리즘’은 독립적인 확인이나 검증 없이 수사 기관의 자료에만 의존하여 보도하는 관행이다. 그렇다면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 침해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참조] ‘처널리즘(Churnalism)’은 보도 자료에 대한 언론의 지나친 의존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다. ‘처널리즘’은 2008년 영국 BBC 기자 와심 자키르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대량으로 찍어 내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churn out’이 ‘journalism’과 결합되어 새로 만들어진 용어다. ‘처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영국의 경우, 전체 기사의 약 80%가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나아가 기자가 독자적으로 취재해 보도한 기사는 12%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마치 공장에서 규격화된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 내듯 작성된 보도 자료를 언론에서 별다른 검증이나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가리킨다.

- 5) 그동안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는데, 근래에는 이와 관련하여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조] ‘피의 사실 공표’는 검사나 수사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공소 제기’의 주체이기도 하다. “제가 피의 사실 공표를 저질렀는데요, 그에 대한 공소 제기를 스스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요원해 보인다.

문단3 : 범죄 보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 1) 그러나 범죄 보도에 대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할 때 일체의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자는 주장에는 한계가 있다.
[맥락 짚기] ‘피의 사실 공표’가 문단2에서 설명한 대로 많은 문제를 낳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할 수는 없다** 애기다. 보아하니 이걸 ‘알 권리’와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
2) 실제로 대법원은 범죄 혐의의 보도 중 **공공성을 띤 것은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한 방법**이라 밝힌 바 있다.
⇒ **설령 공소 제기 전에** 이루어진 ‘범죄 혐의의 보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성**을 갖추었다면 ‘알 권리’를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애기다.
- 3) 우리 헌법은 알 권리를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알 권리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 헌법에 명시된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하려면 정보에 대한 접근근에도 자유로워야 하겠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언론 출판의 자유와 같은 표현의 자유가 가능할 게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알 권리’는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다는 거다.
- 4) 물론 재판 과정에서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공소 제기 전의 피의 사실 공표가 알 권리와 무관하다**는 의견도 있다.
[Rew] ‘피의 사실 공표죄’는 **공소 제기 전에**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것임을 문단1-2)에서 밝혔다.
⇒ 공소 이후 재판 중에는 피의 사실 공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이로써 충족 가능하므로, 굳이 공소 제기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해야 알 권리가 충족되냐는 반론이 있겠다.
- 5) 다만 지금껏 권력형 비리의 수사를 [권력의 강압에 의해]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어서, **범죄 보도를 통한 권력 감시**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주목] 1)의 ‘일체의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다.
⇒ ‘범죄 보도를 통한 권력 감시’는 피의 사실 공표의 긍정적 기능이 되겠다. 가령 검사장이나 국회 의원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수사는 권력의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긴 어려울 게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면, 그 자체가 훌륭한 권력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듯 ‘피의 사실 공표’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단4 : 위법성 조각 사유

- 1) 결국 피의자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 중 어떤 법익을 더 중시할지를 따지는 **이익 형량**을 통해 **피의 사실의 가능한 공표 범위와 절차를 정할 수밖에 없다.**
⇒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해 피의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정도와 알 권리 중에 뭘 더 중시할지는 ‘이익 형량’을 통해 결정되되, 피의 사실의 가능한 공표 범위와 절차도 이를 통해 정해야 한단다.
- 2) 현재 형법 제126조에 **위법성 조각(= 방해하거나 물리침)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을 통해 이를 갖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Rew] 문단1-2)에서 밝혔듯이, 형법 제126조에 ‘피의 사실 공표죄’가 규정되어 있다.

⇒ 이의 형량을 통해 피의 사실의 가능한 공표 범위와 절차를 정하려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또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뭐냐 하면 ……

3) **위법성 조각 사유**란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말한다.

⇒ …… 형식적으로는 범죄인데,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뜻한다. 이게 뭐 말인가 하면, 가령 A가 B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집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갔으므로 범죄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는 동네에 돌아다니는 사납고 큰 개에 위협을 느껴서 B의 집에 들어갔다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이런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참고] 형법상 범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 성립한다. 이를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고 표현하며 범죄 성립의 3대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이 중 ‘위법성’과 관련 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는 정당 행위(형법 제20조), 정당방위(형법 제21조), 긴급 피난(형법 제22조), 자구 행위(형법 제23조),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등이 있다.

문단5 : 피의 사실 공표에 관한 법무부 훈령

1) 형법 제126조를 통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질 수 없는 현 상태에서, ……

[Rew] 문단4-2)에서 설명했듯이, 현재 형법 제126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말이 어렵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질 수 없는 현 상태’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볼 수 없는 현재 상태를 뜻한다. 어쨌든 ‘위법성 조각 사유’를 대신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2) …… 각 수사 기관이나 그 지휘 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 사실의 가능한 공표 범위와 절차를 자체 훈령으로 제정하고 이를 따르고 있다.

[주목] ‘알 권리’를 위한 피의 사실 공표 범위와 절차다.

⇒ 이게 대안이다. 수사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오픈할 지 결정하나 보다.

3) 2019년 법무부가 제정한 훈령인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법무부가 제정한 훈령을 통해 피의 사실 공표 범위와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4) 범죄 재발이나 피해 확산의 방지, 범인 검거나 증거 확보에의 협조 필요,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의 고지, 오보에의 대응 등이 그것이다.

⇒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다. 이러저러한 항목들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중 특히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피의 사실 공표는 알 권리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격권까지 고려한 공표에 해당한다.

[주목] 법무부 훈령의 내용 중 ‘오보에의 대응’은 ‘인격권’의 법익을 위한 것이다.

⇒ ‘범죄 재발이나 피해 확산의 방지, 범인 검거나 증거 확보에의 협조 필요,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의 고지’ 등이 알 권리를

위한 공표 범위라면, ‘오보에의 대응’은 피의자의 인격권을 고려한 공표 범위에 해당한다.

6) 그 외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중요 사건의 경우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이의 형량에 따른 의결을 거쳐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5)에서 제시한 것 외의 중요한 사건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피의 사실이 공표된다.

7) 이 훈령에 따르면 모든 피의 사실의 공표는 절차상 반드시 검사나 수사관과 구분되는 전문 공보관에 의해 공식적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주목]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절차’이다.

⇒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 수사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전문 공보관’에 의해, 비공식이 아닌 공식적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훈령에서 정했다.

문단6 : 법무부 훈령의 의의

1) 법무부의 훈령이 언론의 감시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여론의 흐름을 바꾸려는 목적이나 기타 정치적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같은, 수사 기관의 법적, 윤리적 일탈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법무부 훈령에 문제가 있긴 하나,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2) 특히 법무부의 훈령에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둔 것은 피의 사실 공표의 자의적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알 권리를 충족하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민간 위원도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어쨌든 1)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다.

* 수록 지문 평가

내용이 진솔하고 현실에 밀착되어 있어서 가사 문학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는 작품이다. 전쟁 직후 궁핍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수록 지문 분석

토막1 : 전쟁터에서도 충성심을 잃지 않고 보낸 세월을 회상

좁고 주름 절실하다 일 단심(一丹心)을 잊을런가

→ 굶주림과 추위가 몸을 괴롭힌다 한들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을 잊겠는가.

⇒ 설의법이다. ‘가난’ 속에서도 ‘일편단심’만은 잊지 않겠다.

의기(義氣) 떨쳐 내 몸 잊고 죽어야 말리 여겨

→ 의에 분발하여 내 몸 돌보지 않고 ‘죽어서야 [일 단심을] 포기 하겠노라’고 마음을 먹어

⇒ 주의하자. 여기부터는 과거 장수 시절의 전쟁 얘기다. 참고로, 작가 박인로는 임진왜란을 치른 해군 장수였다.

전대와 주머니에 줌뭉이 모아 넣고

→ 전대와 망태에 한 줌 한 줌 모아 넣고

⇒ ‘전쟁에 뛰어들기 위해 준비물을 챙겨서……’ 정도다.

병과 오재(兵戈五載, 오 년에 걸친 전쟁)에 감사심(敢死心,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 있어

→ 오년 동안의 전쟁에 ‘감히 죽어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시 섭혈(履尸涉血, 시체를 밟고 피의 강을 건넌)하여 몇 백 전(戰)을 지냈던가

→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 몇백 번 싸움을 치렀던가.

⇒ ‘전쟁의 치열함’과 화자의 ‘용맹함’이 느껴진다. 여기까지의 흐름은 이 정도다. “그 힘든 전쟁터에서도 일 단심을 버린 적이 없는 내가, 가난 따위 때문에 일 단심을 버릴 리가 있겠는가?”

토막2 : 농사철을 잊고 있던 상황

일신(一身)이 여가 있어 일가(一家)를 돌아보라

→ 내 한 몸이 겨를이 있어서 집안을 돌보랴?

⇒ 설의법이다. 내 한 몸 추스릴 여유가 없으니 집안을 돌볼 여유도 없다. 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

하나뿐인 늙은 종은 종의 도리 잊었거든

→ 늙은 종은 ‘하인과 주인의 분수’를 잊어버렸는데

⇒ 몰락 양반의 비애다. 주인이 종을 먹여 줄 형편이 안 되니, 종 또한 ‘하인과 주인의 도리’를 다할 이유가 없었던 게다.

농사철 알려 줌을 어느 사이 기대하리

→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 줄 것을 어찌 생각이나 하겠는가.

⇒ 지금은 종이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않는다. ‘봄이 오면 하인이 주인에게 농번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일’을 하지 않는 거다.

(중략)

토막3 : 소를 빌리러 갔다 수모를 당하고 옴

소 한때 주마 하고 엉성히 하는 말씀

→ “소 한 번 빌려 주마.” 건성으로 하는 말[을 곧이듣고],

⇒ 소 없이 쟁쟁대는 화자를 보고 누군가 한마디 말을 던졌던 거다. 그 말……, 상대는 빈말이었는데…….

친절하다 여긴 집에 달 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달려가서

→ ‘친절하다’고 생각한 집으로 달 없는 저녁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 그냥 ‘사심 없는 호의’라고 생각했던 거고, 다급했던 게다.

굳게 닫은 문밖에 아득히 혼자 서서

→ 굳게 닫은 문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큰기침 아함을 오래도록 하온 후(後)에

→ 큰기침 ‘에헴’을 꽤 오래도록 한 후에야

⇒ 궁색한 부탁을 하러 늦은 시간에 남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벌컥 열 수도 없고, 상대방이 나의 기척을 알아차릴 때까지 우두커니 서서 헛기침이나 하고 있을 수밖에.

어와 거 뉘신고 염치없는 나로소이다

→ “어, 그 누구신가?” [묻기에] “염치없는 저울시다.”

초경(初更, 저녁 7시~9시)도 거원데 게 어찌 와 계신고

→ “초경이 거의 다 되었는데 무슨 일로 와 계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하기 구차(苟且)한 줄 알건마는

→ “해마다 이러기가 구차한 줄 알지마는

소 없는 궁가(窮家)에 걱정 많아 왔삽노라

→ 소 없는 가난한 집에서 걱정이 많아 왔소이다.”

⇒ 그래도 양반 체면에 노골적으로 ‘빌려 달라’고 말하진 않는다. 그냥 걱정이 많단다.

공(空)으로나 값 치거나 줌 직도 하다마는

→ “공짜로나 값을 쳐서나 간에 [소를 빌려]줄 만도 하다면

⇒ ‘선약 때문에 못 빌려준다’고 하면서 슬쩍 끼워 넣는 얘기가 좀 묘하다. 공짜로 빌려줄 수도 있고 값을 받고 빌려줄 수도 있다는 거다. 아니 상대는 당연히 ‘공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료일 가능성’을 슬쩍 내비치는 의도는? 맞다. 소 주인은 대가를 받고 싶은 게다. 결국 이 구절은 대가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상당히 완곡하게 내비치는 표현인 셈인데……

다만 어젯밤에 건넛집 저 사람이

→ 다만 어젯밤에 건넛집 저 사람이

⇒ 소를 먼저 예약한 사람이 있었던 거다.

목 붉은 장끼를 기름지게 구워 내고

→ 목 붉은 수평을 구슬 같은 기름이 끓게 구워 내고

갓 익은 삼해주(三亥酒)를 취(醉)토록 권하거든

→ 갓 익은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이러한 은혜를 어이 아니 갚을런고

→ 이러한 은혜를 어찌 아니 갚겠는가?

⇒ 이것 봐라. 먼저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소를 빌려줘야겠다는 얘기가. 역시 이 ‘소 주인’이 원하는 것은 ‘대가’인 거다. 이 역시 대가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하는 셈이다.

내일로 주마 하고 큰 언약 하였거든

→ 내일 [소를 빌려]주마 하고 굳게 약속을 하였기에

⇒ 아무튼 대가를 받았기에 약속도 했다.

약속 어김 편치 않아 말씀이 어려워라

→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 못하니 말씀하기가 어렵구료.”

⇒ 완곡한 거절을 한 셈이다.

실위(實爲) 그러하면 설마 어이할고

→ “정말로 그렇다면 설마 어찌하겠는가”

⇒ 이진 화자가 실제로 ‘소 주인’에게 내뱉은 말, 즉 대사일 수도 있고, 그냥 혼자 속으로 내뱉은 말, 즉 내적 독백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화자는 ‘소 주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느낌은 아니다. 허나 믿든 말든 화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다.

헛 갓을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 헛 모자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 신고 맥없이 물러 나오니

⇒ 초라한 행색이다. 소 대여를 거절당한 직후라 더욱 초라하게 느껴진다.

풍채(風采) 적은 형용(形容)에 개 짓게 할 뿐이로다 → 풍채 작은 내 모습에 개가 짓을 뿐이로구나. ⇒ 아아, 쪽팔린다. 모멸감, 수치심, 자괴감…… 등등. 소 빌리려다 거절당했다고 그런 기분까지 가는 건 심하다고?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의 양반이다. 양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을 게다. 와실(蝸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 작고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 집으로 왔다. 같은 초가집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화자의 내면도 다르게 읽힐 거다. 지금 화자는 자신의 집을 ‘와실’ 즉 달팽이의 집처럼 작고 초라한 집이라고 불렀다. 스스로 왜소하게 느껴지고 있는 게다. 북창(北窓)을 비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 북쪽 창문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을 샌다. 무정(無情)한 오디새는 이내 한(恨)을 돕는구나 → 무정한 오디새는 나의 한을 돕는구나. ⇒ 이 ‘오디새’는 화자의 우울한 기분을 더 자극한다. 아침 내내 한탄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 아침 마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없이 들리도다 → 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 없게 들리는구나. ⇒ ‘농가’가 중요한 소재다. ‘농가’는 화자의 기분과 대조되는 분위기의 소재다. 남들은 농사를 짓느라 바쁘는데 화자는 그럴 수가 없다. 세정(世情, 세상 형편. 또는 세상 사람들의 인심)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 →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른다. ⇒ ‘난 멍충이’란 기분이다. 땡 새끼라도 가져갔어야 하는데. 술 고기 있으면 권당(= 친족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벗도 많으련만 → 술과 고기가 있다면 일가친척과 친구도 많을 텐데 ⇒ 살림이 넉넉했다라면 주변에 사람도 많았을 텐데 두 주먹 비게 쥐고 세태 없는 말쑥에 모양조차 못 고우니 → 텅 빈 두 주먹을 쥔 채 세상의 돌아가는 이치나 인정을 모르고 말을 하는 데다가 외모조차 곱지 못한 나라서 ⇒ 자신의 한심한 처지를 말한다. 가진 재산도 아무 것도 없고,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말할 줄도 모르고, 외모도 남의 눈에 곱게 보이지 않는다.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리고 말았거든 → [겨우] 하루 동안 일을 시킬 소도 못 빌렸는데 ⇒ 소를 못 빌렸으니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자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있다. 하물며 동곽 번간(東郭驛間)에 취할 뜻을 가질쏘냐 → 하물며 남에게 유들유들하게 빌붙을 뜻을 품을 수 있겠는가. ⇒ ‘동곽 번간’이란 말은 동문 밖 묘지라는 말이다.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고사성어의 주인공은 매일 동문 밖 묘지를 기웃거리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얻어먹고 취해서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는 지체 높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어울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잘난 척한다. 비굴한 어울림과 허세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다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비벼 댄다는 거짓말을 믿어 준다면] 부귀공명을 위해 남에게 빌붙는 태도라는 의미도 더해진 것으로 이해하자. 이 대목에서 화자가, 소 잠깐 빌리는 일도 하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낫 두절게 빌붙어 어울릴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아까운 저 소뉘(= 쟁기)는 벗 보임도 좋을시고	→ 아까운 저 쟁기는 [잘 갈아서] 날도 좋구나. ⇒ ‘소뉘’가 중요한 소재다. ‘소뉘’는 화자의 기분과 대조되는 분위기의 소재다. 번쩍번쩍하다.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용이(容易)케 갈련마는 →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쉽게 갈 수 있으면만 빈방 반벽(半壁)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 텅 빈 집 벽 가운데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 소가 없으니 무슨 소용이난 말이다.
--	---

[32~37] 예술-인문 : 작품의 도덕성과 미적 가치에 대한 거트의 견해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영상 예술 - 다큐멘터리 영화

「의지의 승리」, 다큐멘터리 영화

인문 - 미학 - 분석 미학

자율주의, 도덕주의, 거트, 도덕적 장점, 도덕적 결함, 도덕적 속성, 미적 인 속성, 미적 장점, 미적 결함, 도덕적 통찰, 프로 탄토 원칙

* 지문 분석

문단1 : 비도덕적 작품의 아름다움

1) 리펜슈탈 감독의 「의지의 승리」는 뛰어난 영상미를 지니고 있어서 다큐멘터리 영화의 백미로 꼽히지만, 비도덕적인 내용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나치를 미화하고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정당화하였기 때문이다.

⇒ 한마디로 ‘다큐멘터리 영화’의 형식으로서의 으뜸이지만, 내용은 영 쓰레기라는 얘기다. 이걸 명작이라고 해야 할지, 졸작이라고 해야 할지 ……

[참조] 「의지의 승리」는 나치당 전당 대회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특히 카메라 촬영 기법이 탁월하다. 다만 내용적으로 나치 독재를 찬양하는 선전물이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연설하는 히틀러의 모습은 시종일관 로우 앵글로 촬영된다. 그 결과 관객은 내내 히틀러를 우러러보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

2) 의도의 산물이자 감상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인 예술 작품은 다른 모든 문화 산물이나 제도가 그러하듯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도덕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도 아름다운 것일 수 있을까?

⇒ 리펜슈탈 감독이 ‘우연히’ 나치를 미화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을까? 결코 아닐 게다. 이렇게 감독의 의도하에 만들어진 「의지의 승리」는, 막말로 어떤 관객을 나치 숭배자의 길로 나아가게 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의지의 승리」는 부정적인 도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게다.

[맥락 짚기] 그렇다면 이런 비도덕적인 예술 작품을 우리는 과연 아름답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도덕적 평가’는 ‘미적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문단2 : 자율주의

1) 근대 이후 비평계에서는 선험[→ 도덕적 속성]과 아름다움[→ 미적 속성]을 별개의 속성으로 보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기는 자율주의가 지배적이었다.

⇒ ‘자율주의’는 도덕적 속성과 미적인 속성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오해하지 말자. 예술 작품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부정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도덕적 평가’와 ‘미적 평가’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다.

2) 자율주의에 따르면 작품의 내용이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인 도덕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그로 인해 결코 미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고, ……

⇒ 한마디로 선험하다고 해서 아름답다고 볼 이유도 없고 ……

3) ……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인 도덕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미적으로 나쁘다고 할 이유는 없다.

⇒ …… 악하다고 해서 추하다고 볼 이유도 없다는 얘기다.

4) 작품이 감상자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작품의 미적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자율주의’에 따르면 「의지의 승리」는 나치를 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이 감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

⇒ …… 그렇다고 해서 「의지의 승리」가 아름답지 않은 작품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게다. 이들은 문단1-2)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할 게다. “도덕적 평가와 미적 평가는 무관하기 때문에 ‘비도덕적 내용’을 담은 작품도 아름다울 수 있다.”

문단3 : 도덕주의와 거트

1) 이와 달리 선험과 아름다움 사이의 긴밀한 연관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도덕주의가 있다.

⇒ ‘도덕주의’는 문단2)의 ‘자율주의’와 정면충돌한다. 이들은 도덕적 속성과 미적인 속성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인 게다. 이들에 따르면 ‘비도덕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은 그 내용 때문에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

2) 도덕주의의 여러 분파 중 한 입장을 대표하는 거트는 특히 작품이 지닌 도덕적 속성 중에는 그 자체가 미적인 속성인 것이 있다고 보았다.

[맥락 짚기] 그중에서도 특히 ‘거트’의 입장을 살펴보자.

⇒ 이 문장은 ‘도덕적 속성’과 ‘미적인 속성’ 사이에 긴밀한 연관이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속성’ 중에는 그 자체로 ‘미적인 속성’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기도 한다.

3) 그에 따르면 작품의 도덕적 속성은 작품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작품의 제작 의도나 제작 과정, 그리고 감상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도덕적 속성[→ ‘작품 외적인 것’]의 경우 상황이나 우연에 좌우되는 외적인 속성으로서 작품의 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거트’에 따르면 도덕적 속성 중에서도 ‘작품 외적인 것’은 작품의 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우가 과거에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나 ‘감독이 작품 수익을 전부 고아원에 기부했다는 사실’ 등은 작품의 미적 가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4) 반면 작품에 내재된 도덕적 관점이나 태도는 작품에 본유적인 내적인 속성으로서 미적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이와 달리 도덕적 속성 중에서 ‘작품 내적인 것’은 작품의 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의지의 승리」의 도덕적 속성이 미적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리펜슈탈 감독이 나치를 열렬히 지지했기 때문[→ 외적 속성]이 아니라, 그 작품의 내용이 나치를 미화했기 때문[→ 내적 속성]이라는 얘기다.

[맥락 짚기] ‘거트’는 ‘도덕적 속성’을 상황이나 우연에 좌우되는 ‘외적인 속성’과 작품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내적인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후자만이 그 자체로 ‘미적인 속성’이 되어 작품의 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게다.

문단4 : 거트의 주장

1) 거트는 자율주의와 달리 우리가 도덕적, 비도덕적 행동을 반추(= 어떤 일을 되돌이하여 음미하거나 생각함)할 때 느끼는 쾌, 불쾌와 미적인 것이나 추한 것에서 느끼는 쾌, 불쾌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한마디로 ‘도덕적 속성’과 ‘미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도덕적 속성’이 곧 ‘미적인 속성’인 것은 아니었고 ……

2) 작품에 내재한 도덕적 장점이나 도덕적 결함과 관련된 도덕적 속성이 그 자체로 일종의 미적인 속성인 것이다.

[Rew] …… 문단3-4)에서도 설명했지만 ‘거트’에 따르면 ‘도덕적 속성’ 중에서 ‘내적인 속성’만이 그 자체로 일종의 ‘미적인 속성’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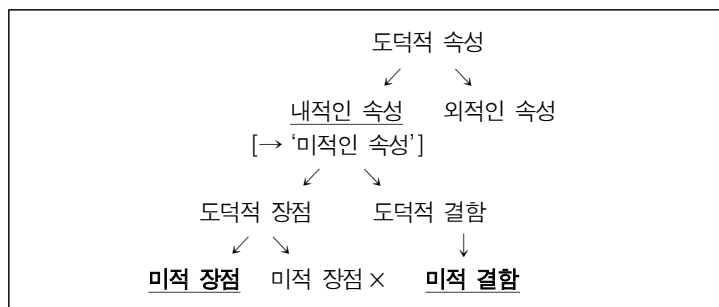
- 3) 거트에게 따르면 감상자에게 불쾌를 불러오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작품이 미적 결함을 지니는 것은 자명하다.
- ⇒ ‘도덕적 결함’을 내적인 속성으로 갖는 작품의 경우 항상 도덕적 결함이 미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 4) 다만 도덕적 장점이 곧 미적 장점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다.
- ⇒ ‘도덕적 장점’을 내적인 속성으로 갖는 작품의 경우 도덕적 장점이 미적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는 좀 더 읽어 봐야겠다.
- 5) 예를 들어 회화 작품의 한 구석에 ‘친절은 미덕이다.’와 같은 진부한 도덕적 경구가 적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작품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인 것이 아니라 그저 덧붙여진 요소에 불과하다면, 그 관점이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아무런 미적인 영향조차 미치지 않는다.
- [백락 짚기]** ‘도덕적 장점’이 작품의 미적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첫 번째 경우다.
- ⇒ 어떤 ‘도덕적 장점’이 작품 ‘내적인 속성’이라도 그것이 작품의 본질적 내용과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미적 장점’일 수 없다는 얘기다. 알 것도 같다. 작품의 서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이 갑자기 ‘진부한 도덕적 경구’를 던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6) 또한 도덕적 장점이 곧 미적 장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감상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 [백락 짚기]** ‘도덕적 장점’이 작품의 미적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두 번째 경우다.
- ⇒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아무래도 좀 더 읽어 봐야겠다.
- 7)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란 그것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여 독자들에게 거짓된 믿음을 형성하게 함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을 말한다.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요청하는 도덕적 장점도 작품에 아무런 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이제 알겠다. ‘도덕적 장점’이 ‘미적 장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지 않아야 한다. 4)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겠다.

<도덕적 장점 = 미적 장점이 되기 위한 조건>

- ① ‘도덕적 장점’은 작품 내적인 속성이어야 한다.
- ② ‘도덕적 장점’이 작품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 ③ ‘도덕적 장점’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여 거짓된 믿음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문단5 : ‘프로 탄토 원칙’

- 1) 거트는 이처럼 어떠한 조건하에서 도덕적 속성은 곧 미적 가치를 이끈다고 보았다.
- [백락 짚기]** 아무래도 ‘어떠한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 모든 도덕적 속성이 곧 ‘미적 장점’이나 ‘미적 결함’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 2) 특히 미적 관련성을 가진 거의 모든 도덕적 통찰은 미적 가치를 가진다.
- ⇒ 이때 ‘도덕적 통찰’은 1)에서 ‘미적 장점’이기도 한 ‘도덕적 장

점’ 정도로 이해해도 무방하겠다.

- 3) 그런데 권선징악적 관점이나 애국심, 세계 평화와 같은 도덕적 통찰을 담은 일부 할리우드의 영화들이 상투적인 사건 전개나 예술적 기교의 미숙함으로 그리 높지 않은 미적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도덕적 통찰을 담는다고 하여 반드시 미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백락 짚기] 날카로운 비판이다. ‘거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적 통찰’은 곧 ‘미적 장점’이 되어 작품의 미적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 가치가 형편없는 작품도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 4) 거트는 이에 대해 ‘프로 탄토 원칙’을 제시한다. 프로 탄토란 ‘그것만큼’을 의미하는데, 이 원칙은 작품의 도덕적 장점이 작품 전체를 미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혹은 도덕적 결함이 작품 전체를 미적으로 결함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 장점이나 결함에 해당하는 만큼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주목] ‘거트’의 반박이다. 어떤 ‘도덕적 장점’은 딱 그만큼의 ‘미적 장점’이 되어 그 작품의 미적 가치에 딱 그만큼의 긍정적인 영향만 미친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그 작품의 미적 가치가 높아지게 하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도 작품 전체의 미적 가치가 높아지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 5) 거트에게 따르면 작품에는 도덕적 속성 외에 다른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도덕적 결함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미적 결함을 만들어도 다른 미적인 속성들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인 경우라면 작품은 미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자. 어떤 ‘도덕적 장점’이 +50만큼의 ‘미적 장점’을 만들어도 다른 미적인 속성들에 의해 그 작품의 미적 가치가 원래 -100이었다면, ‘도덕적 장점’은 상쇄되어 그 작품의 미적 가치는 -50이 될 게다. 즉 여전히 형편없을 게다.

⇒ 반대로 어떤 ‘도덕적 결함’이 -50만큼의 ‘미적 결함’을 만들어도 다른 미적인 속성들에 의해 그 작품의 미적 가치가 원래 +100이었다면, ‘도덕적 결함’은 상쇄되어 그 작품의 미적 가치는 +50이 될 게다. 즉 여전히 탁월할 게다.

문단6 : ‘프로 탄토 원칙’에 대한 비판

- 1) 도덕주의에 입각한 거트의 문제의식은 비판적 논란을 불러 왔고 도덕주의 내에서도 다양한 분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거트의 프로 탄토 원칙에 대해서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백락 짚기] 문단5-3)에 대한 반박으로 ‘프로 탄토 원칙’이 제시된 셈인데, 그것이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되었나 보다.

- 2) 예컨대 「의지의 승리」의 뛰어난 영상미에 대한 평가가 도덕적 결함으로 인한 미적 손실을 상쇄한 결과인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미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결과인지를 판단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정말 날카로운 비판이다. 「의지의 승리」가 뛰어난 영상미 때문에 ‘+100만큼의 미적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100은 ‘+150이었는데 비도덕적인 내용으로 인해 -50만큼의 미적 가치가 손실된 결과’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100이었고, 미적 가치는 전혀 손실되지 않은 결과’일까?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

[참조] 심지어 ‘애초에 그런 미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결과’가 사실이라면, 어쩌면 작품의 도덕적 속성이 그 미적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도덕주의’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게다.

- 3) 그리고 프로 탄토 원칙이 적용되는 방향이 그렇게 확실적인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도덕적 장점이 미적 결함을 낳거나 도덕적 결함이 미적 장점으로 이어지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 ‘프로 탄토 원칙’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이다. 왜 ‘도덕적 장점’이
항상 그만큼의 ‘미적 장점’이 되고, ‘도덕적 결함’이 항상 그만큼
의 ‘미적 결함’이 되어야 하냐는 얘기다.

4) 비도덕적 관점을 취하는 상상적 경험이 예술적 풍부함으로 연결될
수 있고

⇒ 어떤 ‘도덕적 결함’은 작품의 미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미적
장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5) 진부한 도덕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예술적 상상력의 싹을
잘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어떤 ‘도덕적 장점’은 작품의 미적 가치를 깎아 내리는
‘미적 결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말이다.



[38~41] 과학 : 적색 편이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물리학 - 우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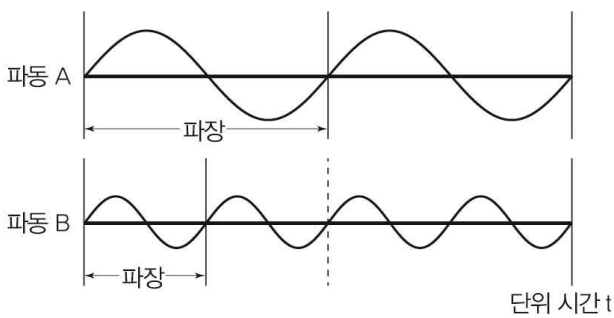
파동, 파장, 진동수, 분광기, 스펙트럼, 스펙트럼선, 적색 편이, 청색 편이, 적색 편이 값, 도플러 적색 편이, 상대성 이론, 시간 지연 현상, 좌표계, 상대 속도, 광원, 주기, 후퇴 속도, 중력 적색 편이, 중력 퍼텐셜 에너지

* 지문 분석

문단1 : 적색 편이와 청색 편이

1) 파동에서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 길이를 파장이라 하고 단위 시간 동안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횟수를 진동수라 하는데, 파장은 진동수에 반비례한다.

⇒ 파동 A와 파동 B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파동 B의 파장이 파동 A의 파장의 1/2 밖에 안 되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파동 B의 진동수는 파동 A의 진동수의 2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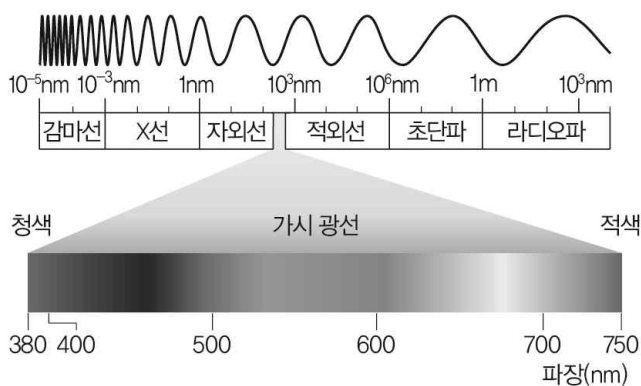


⇒ 파동의 파장과 진동수가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text{파장} \propto 1/\text{진동수}$$

2) 파장이 서로 다른 빛들이 뒤섞여 있을 때 분광기를 통해 이들을 분리하면 [파장이 서로 다른] 각각의 빛들이 파장의 길이순으로 배열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에서는 파장이 긴 적색의 스펙트럼선이 한쪽 끝에, 파장이 짧은 청색의 스펙트럼선이 반대쪽 끝에 위치한다.

⇒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도 파장이 서로 다른 빛들이 섞여 있다. 이를 분광기를 이용하여 분리하면 각각의 빛들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 배열된다. 이를 스펙트럼이라 한다. 파장의 길이에 따른 빛들의 배열은 다음 그림과 같다.



3) 그런데 천체에서 방출된 빛을 관측하면 해당 빛의 스펙트럼선이 원래의 위치에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관측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파장이 긴 쪽으로 밀리는 현상을 『적색 편이』, 파장이 짧은 쪽으로 밀리는 현상을 『청색 편이』라 한다.

⇒ 스펙트럼선이 파장이 긴 적색 쪽으로 치우치면 ‘적색 편이’, 파장이 짧은 청색 쪽으로 치우치면 ‘청색 편이’라고 한다. 스펙트럼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4) 스펙트럼선이 치우친 정도를 뜻하는 『적색 편이 값』은 관찰자가 관찰한 빛의 파장에서 천체에서 방출될 때의 파장을 뺀 값을 천체에서 방출될 때의 파장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 스펙트럼선이 치우친 정도를 나타내는 ‘적색 편이 값’은 다음과 같다.

$$\text{적색 편이 값} = \frac{\text{관찰자가 관찰한 빛의 파장} - \text{천체에서 방출될 때의 파장}}{\text{천체에서 방출될 때의 파장}}$$

‘관찰자가 관찰한 빛의 파장’이 길수록 ‘적색 편이 값’이 커진다.

5) 이 값은 적색 편이가 나타날 때에 양수, 청색 편이가 나타날 때에 음수가 된다.

⇒ 그렇단다. 정리하자.

$$\begin{aligned} \text{적색 편이 값} > 0 : \text{적색 편이} \\ \text{적색 편이 값} < 0 : \text{청색 편이} \end{aligned}$$

문단2 : 시간 지연 효과

1) 빛을 방출하는 광원인 천체와 관측자가 서로 멀어질 때에 발생하는 적색 편이를 『도플러 적색 편이』라 한다.

[맥락 짚기] 보아하니 ‘적색 편이’에도 종류가 있나 보다.

⇒ 천체와 관측자가 서로 멀어질 때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천체가 멀어질 때, ‘천체에서 방출될 때의 빛의 파장’보다 ‘관찰자가 관찰한 빛의 파장’이 길어졌다는 뜻일 게다. 이는 분명 빛을 방출하는 천체가 점점 멀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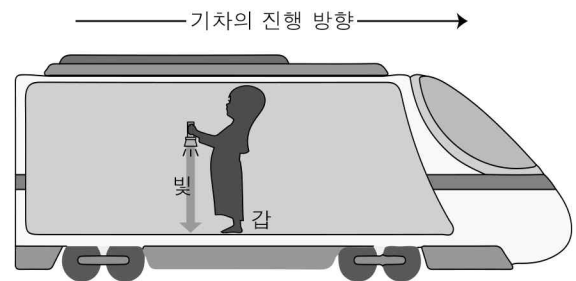
2) 이는 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시간 지연 현상은 관찰자가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 내부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찰되는 것을 말한다.

⇒ 관찰자가 정지해 있을 때 좌표계도 정지해 있거나, 관찰자가 움직이고 있을 때 좌표계도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좌표계는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좌표계’이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모든 좌표계가 곧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에 해당할 게다. 그런데

⇒ 그런 좌표계 내부의 시간은 관찰자 입장에서 느리게 흐르는 것 [→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려도 일단 인정하고 설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는데

3)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바닥을 향해 수직으로 빛을 쏘았을 때, 자동차 안 관찰자[→ 갑]에게는 빛의 경로가 수직으로 보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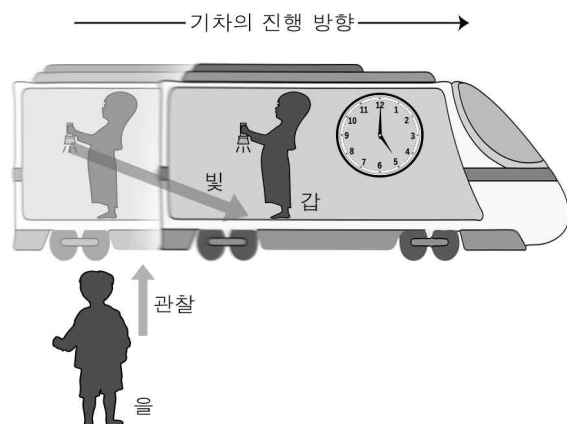
⇒ 달리는 자동차 안에 있는 ‘관찰자 갑’은 자동차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관찰자 갑’이 보았을 때 ‘달리는 자동차 안’은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이때, 바닥을 향해 빛을 쏘면 빛은 바닥과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문은 자동차를 예로 들고 있지만 보다 속도감이 느껴지는 기차를 상상하며 장면을 떠올려 보자.



4) 자동차 밖 정지해 있는 관찰자[→ 을]에게는 자동차의 상대 속도에 비례하여 그보다 더 긴 경로인 사선으로 보인다.

⇒ 자동차 밖에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 을’은, 자동차 안에 있

는 ‘관찰자 갑’과 달리 ‘자동차 안’이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즉 관찰자 을의 입장에서만 ‘달리는 자동차 안’이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 내부’인 것이다. 관찰자 을에게는 빛이 자동차의 진행 방향으로 기울어진 사선으로 보인다. 관찰자 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움직일수록, 빛의 경로가 그리는 사선의 경로는 더욱 길어진다.



5)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인 속도가 일정한데, 이동 거리가 길다는 것은 자동차 밖 관찰자가 볼 때 자동차 안의 시간이 느리게 가고 있음을 뜻한다.

⇒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인 속도가 항상 일정하므로, 빛의 이동 거리가 길어지면 그에 따라 시간도 더 걸리게 된다. 자동차 밖의 정지한 관찰자 을이 관찰한 사선인 빛의 경로 길이가 더 길어질수록 빛의 이동에 걸린 시간도 더 길어진다. 관찰자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좌표계인 자동차 안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셈이다. 4)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의 상대 속도에 비례하여 사선인 빛의 경로가 더 길어지므로, 자동차의 상대 속도가 빨라질수록 빛의 이동 시간은 더 늘어난다. 즉 시간이 지연되는 정도가 더 커지는 것이다.

$$\text{속도} = \frac{\text{이동 거리}}{\text{시간}}$$

속도 일정, 이동 거리 ↑ ⇒ 시간 ↑

문단3 : 도플러 적색 편이

1) 광원[→ 천체]이 일정한 속도로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면서 주기가 f인 빛을 방출한다고 해 보자. 빛의 주기는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진동수의 역수이다.

⇒ 빛을 내는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면서 특정 주기 f마다 빛을 방출한다고 하자. 빛의 주기는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진동수는 단위 시간 동안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횟수이다. 단위 시간을 1초라고 하면, 진동수는 1초 동안에 파동이 진동하는 횟수이므로 주기는 1초를 진동수로 나눈 값이 된다.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이므로 주기가 길수록 진동수는 작아진다.

$$\text{주기} = \frac{1}{\text{진동수}}$$

2) 시간 지연 현상으로 인해 관찰자에게는 빛의 주기가 f인 것이 아니라 f보다 큰 것으로 관찰된다.

[Rew] 문단2에서 확인한 것처럼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멀어지고 있는 천체에서 방출된 빛을 관찰하면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난다. 즉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찰되는 것이다. 1)에서 알 수 있듯이 ‘주기’는 시간이므로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면 빛이 진동하는 주기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빛이 천체에서 방출될 때는 f의 주기를 갖고 있었지만, 시간 지연 현상으로 인해 관찰자에게 관찰될

때는 f보다 더 큰 주기를 가진 것으로 관찰된다.

3) 즉 광원이 방출한 빛의 진동수에 비해 관찰자가 관찰한 빛의 진동수가 작아지는 것이다.

⇒ 주기는 진동수와 역수이므로, 주기가 더 커졌다는 것은 진동수가 작아졌다는 것이며 ……

4) 빛의 속도는 진동수와 파장을 곱한 값으로 일정하므로 진동수가 작아진다는 것은 파장이 길어짐을 의미한다.

[Rew] …… 진동수와 파장을 곱하여 얻는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므로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한다. 즉 진동수가 작아지면 파장은 길어진다. 이는 이미 문단1-1)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begin{aligned} \text{빛의 속도} &= \text{진동수} \times \text{파장} \\ \text{빛의 속도 일정, 진동수} \downarrow &\Rightarrow \text{파장} \uparrow \end{aligned}$$

5) 이는 스펙트럼에서 도플러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관찰된다.

[Rew] 문단1-4)에서 나온 ‘적색 편이 값’을 구하는 공식을 상기하며,

$$\text{적색 편이 값} = \frac{\text{관찰자가 관찰한 빛의 파장} - \text{천체에서 방출될 때의 파장}}{\text{천체에서 방출될 때의 파장}}$$

1)~5)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관찰자가 관찰한 빛의 주기} \uparrow &\Rightarrow \text{관찰자가 관찰한 빛의 진동수} \downarrow \Rightarrow \\ \text{관찰자가 관찰한 빛의 파장} \uparrow &\Rightarrow \text{적색 편이 값} \uparrow \end{aligned}$$

6) 천체가 관찰자로부터 멀어질 때, 도플러 적색 편이 값은 천체가 멀어지는 속도인 후퇴 속도를 빛의 속도로 나눈 값과 같다.

⇒ 천체가 멀어질 때, ‘도플러 적색 편이 값’을 후퇴 속도를 이용해서도 알 수 있다.

$$\begin{aligned} \text{도플러 적색 편이 값} &= \frac{\text{후퇴 속도}}{\text{빛의 속도}} \\ \text{빛의 속도 : 일정} \\ \text{후퇴 속도} \propto \text{도플러 적색 편이 값} \end{aligned}$$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므로, 후퇴 속도와 도플러 적색 편이 값은 비례함을 알 수 있다. 후퇴 속도가 빠를수록 적색 편이 값이 커지는 것이다.

7) 스펙트럼에서 스펙트럼선의 치우친 정도를 분석하여 도플러 적색 편이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천체의 후퇴 속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주목] 도플러 적색 편이 값은 빛의 후퇴 속도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고, 스펙트럼선의 치우친 정도를 분석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은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도플러 적색 편이 값’을 알면 ‘천체의 후퇴 속도’도 알 수 있다는 거다.

8)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천체들의 후퇴 속도를 계산했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천체일수록 그 거리에 비례하여 도플러 적색 편이 값이 더 커서 천체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역시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천문학자들로 인해 우리는 천체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text{지구와 천체의 거리} \uparrow, \text{천체의 후퇴 속도} \uparrow$$

문단4 : 중력 적색 편이

1) 한편, 멀리 있는 천체를 관찰할 때에 발견되는 적색 편이로는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중력 적색 편이]도 있다.

[맥락 짚기] ‘적색 편이’에는 ‘도플러 적색 편이’ 외에도 ‘중력 적색 편이’도 있다 보다.

⇒ 적색 편이가 발생하려면 천체에서 방출된 빛이 지구에 도달하면서 파장이 길어져야 하겠다.

2) 천체에서 방출되는 빛은 천체의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지는데, 중력은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중력 퍼텐셜 에너지**에 의해 야기된다.

⇒ 빛을 끌어당기는 중력은 중력 퍼텐셜 에너지에 기인하는데,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천체는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이 작을수록 큰 에너지로 빛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begin{aligned} \text{중력 퍼텐셜 에너지} &\propto \text{천체의 질량} \\ \text{중력 퍼텐셜 에너지} &\propto 1/\text{천체의 반지름} \end{aligned}$

3) 빛이 천체의 중력을 극복하고 관측자에게 도달하려면 빛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중력 퍼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 천체의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지면서도 관측자에게 도달하려면, 빛 역시 자신의 에너지를 쓰게 된다. 이때 소모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자신을 끌어당기는 중력의 퍼텐셜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

4) 빛의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므로 빛의 에너지 소모로 인해 파장이 길어져서 **중력 퍼텐셜 에너지에 비례하는 만큼 중력 적색 편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 빛은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파장은 길어진다. 빛이 중력을 극복하는 만큼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파장이 길어지므로 문단1-4)에서 알 수 있는 ‘적색 편이 값’을 구하는 공식에 따라 적색 편이 값이 커지게 된다. 극복한 중력의 퍼텐셜 에너지에 비례해서 중력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